BNK금융그룹

ESG 정책집

자금세탁방지 정책

BNK 금융그룹


TOUCH
Your Heart, BNK

Contents

자금세탁방지 정책 03

1. 목적 03

2. 적용 범위 03

3. 기본 원칙 03

4. 기타 05

자금세탁방지 정책

Anti Money Laundering Policy

1. 목적

- BNK금융그룹은 본 정책을 통해 불법적인 자금세탁 행위 및 자금세탁 방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2. 적용 범위

- 본 정책은 BNK금융그룹 및 전 계열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기본 원칙

3.1 직원알기제도(KYE, Know Your Employee)

- BNK금융그룹은 직원 신규채용시 서약서 등의 징구를 통해 직원알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되는 임직원이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채용시부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매년 재직 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도 임직원 신원 확인서를 통해 신용 정보, 평판 위험, 요주 인물 여부 등을 파악하여 자금 세탁 및 테러 방지 관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2 고객확인제도(KYC, Know Your Customer)

- BNK금융그룹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법정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과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고객관계를 수립한 이후에도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적절한 시기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ML/TF, Money Laundering/Terrorist Financing) 위험도를 평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은 법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을 예방하고 감독기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법인 단체 전산 입력의 적정성 및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근거 서류 누락과 관련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3.3 비대면 고객확인제도

- BNK금융그룹은 비대면 고객에 대해서 신분증 촬영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제출 등 감독당국 가이드 준수를 통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와 거래목적을 확인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기준을 준수합니다.

3.4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실사제도

- BNK금융그룹은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주의 인물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거래 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테러자금금지법'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2.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3. FATF에서 발표하는 고위험국가 및 이행 취약국가의 국적자(개인,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
4. 해외지점 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우려하여 발표한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5.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 리스트 등

3.5 정치적 주요 인물(PEP, Politically Exposed Person) 고객확인

- BNK금융그룹은 고객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로 판단되는 경우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ue Diligence)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로 확인된 경우 거래의 계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준법감시인의 검토와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 외국의 행정, 사법, 국방, 기타 정부기관의 고위 관리자
2. 주요 외국 정당의 고위관리자/외국 국영기업의 경영자
3. 왕족 및 귀족들/종교계 지도자들
4.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 또는 단체

3.6 교육 및 전문가 양성

- BNK금융그룹은 사외이사, 경영진, 감사, 준법감시인, 임직원 등 담당 업무 및 지위에 따라 임직원 맞춤형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7 거래 모니터링

- BNK금융그룹은 자금세탁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RPA를 탑재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심 거래 서류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기구(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8 고위 경영진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등의 위험이 있는 상품 및 국가들에 대한 승인

- BNK금융그룹은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관련 부서가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때에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 또는 자금세탁방지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BNK금융그룹은 FATF에서 발표하는 고위험국가 거주자의 경우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3.9 독립적 감사

- BNK금융그룹은 자금세탁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 부서와는 독립된 부서에서 연 1회 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있으며 독립적 감사 시 발견된 미비점 및 개선점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10 자금세탁방지 관련 서류 보관

- BNK금융그룹은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자료 등을 금융거래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4. 기타

4.1 참고자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4.2 제개정 이력

- 2024. 06. 27. 정책 제정 및 시행
- 2026. 07. 24. ESG위원회 결의


TOUCH
Your Heart, BNK